

제9조(보관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임차인은 임차물의 소수선에 따른 비용 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요금을 부담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차임을 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
2. 임차인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당하거나 임차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3. 임차인이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제12조(공용징수)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징수로 인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3조(임차물의 반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기타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종료 후의 손해금) 임차인은 이 계약종료 후에도 임차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집행의 인낙) 임차인이 임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였다.